

2022

11

통권 471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본소 강당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를 주제로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사회 각계에서 많이 참석하여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 (관련 내용 6면, 관련 기사 30면)



상담소 창립 66주년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며 본소 박양덕 이사가 국화꽃을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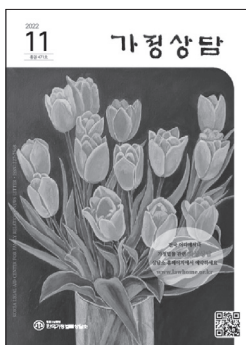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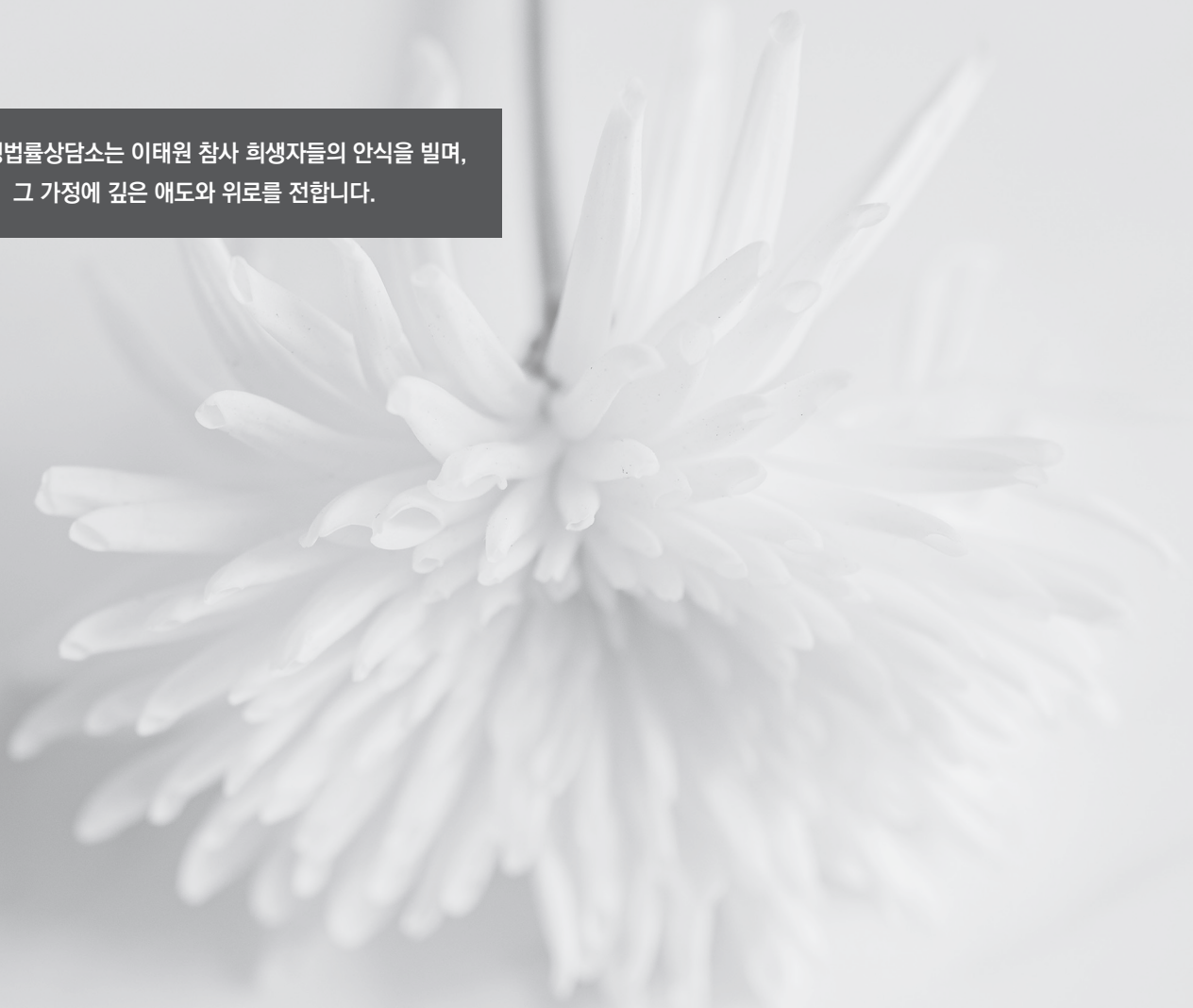
본소는 10월 11일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일행을 맞이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30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은 채움, 부패는 비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며,
그 가정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내수동 튤립〉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 ❶
- 18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❷
- 20 •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⑥
- 22 • 가정폭력상담실
- 25 • 어떻게 할까요
- 29 • 좋은 책
아버지의 해방일지
- 30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5 • 소송구조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가족 문제, 더 세심한 사회적 배려와 판단이 필요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뉴스를 보다 예전에 읽은 소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분례기(糞禮記)’라는 1960년대 후반에 나온 장편소설입니다. “분례”라는 여성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로 “분례”로 표기되는 이름은 아름다운 뜻의 한자어도 있지만, 소설에서 쓰인 이름의 주인공 그녀는 “똥례”로 불리며 그 이름 그대로를 한자로 표기하여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리된 것은 뒷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서는 발일하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일화가 흔하기도 했으니 “분례”와 같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설 ‘분례기’는 태어날 때부터 썩 운이 좋지 못했던 여성의 불행한 서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언론에서 불행하고 비극적인 출산, 출생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화장실 출산, 모텔에서 출산 등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 목숨을 잃거나 위기에 처한 어린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더해지게 되니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공론화하던 초기에는 비교적 깨어 있는 이들 가운데에도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로 단어 자체를 내놓기 꺼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고 그것은 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호주제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 상담소가 주도해온 가족법개정운동과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호주제나 가정폭력 모두 우리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 내지는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호주제 폐지와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문제에 있어 호주제나 가정폭력은 이를테면 거대 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문제는 이와 같은 거대 담론의 주제에서 더 깊고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변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 등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물론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의 문제는 인류사의 유서 깊은 과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전설과 신화에서조차 등장하는 주제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회 전체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가정을 중심에 놓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축복받으며 태어나는 사회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안에는 어린 여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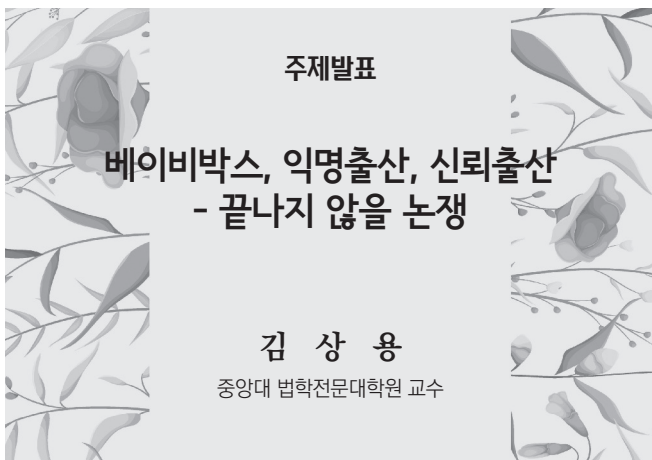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모든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듯이 가정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칼로 자르듯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상담소에서 심포지엄의 주제로 선택한 ‘보호출산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인권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이 제도가 자녀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이렇듯 다양한 주제를 놓고 충분한 토론과 상호설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실현해감으로써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사각지대에서 외톨이로 고립되어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더욱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약자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자신을 위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돕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와 같은 주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더불어 논의할 수 있을 때, 사회와 가정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귀하게 여겨지고 어떤 누구 한 사람도 피폐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돌보고 보듬는 사회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한 생명이 있어야 가정과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라는 자각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 (I)



I. 들어가는 말

2009년에 한 종교기관에 의해 서울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¹⁾ 2012년에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우리사회에서는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²⁾ 이 논쟁의 중심에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자녀의 생명권’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가는 것을 허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익명출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자녀는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베이비박스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와 같이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설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받으며 출산을 할 수 있는 익명출산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이 영아유기나 영아살해를 방지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유기를 조장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에 관한 찬반론은 지금까지도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타협의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본소 강당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를 주제로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내용을 신는다. 토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 1) 우리사회에서는 2009년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군포에도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다. 2013년 9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2) 필자는 2013년에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논쟁이 이어졌다.

필자는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베이비박스, 익명출산에 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인적인 의견의 서술은 가급적 자제하였다.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의 개요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유럽에서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세기부터 19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가톨릭 지역에서 많은 수의 수도원과 고아원은 담장에 회전되는 아기 상자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 아기를 상자에 놓고 종을 울리면 내부에서 사람이 나와 상자를 회전시켜 아기를 받았다. 당시에 수도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유는 미혼모에 의한 영아살해와 유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 사라졌던 베이비박스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영아유기치사와 영아살해를 목적으로 민간 기관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다른 유럽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익명출산은 20세기에 들어와 프랑스에서 베이비박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며, 역시 그 목적은 영아살해를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출산 전후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 보다 진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점은 베이비박스와 마찬가지로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결과,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익명출산 역시 1990년대에 들어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뢰출산은 익명출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승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4년에 체코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제도의 틀을 갖춘 것은 2014년 독일의 입법을 통해서였다. 임신여성에 대해서 의료 및 상담서

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생모의 익명성과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의 조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신뢰출산 역시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은 모두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치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란 미혼모 등이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고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베이비박스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에 관한 법규정이 없으므로, 베이비박스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없다.³⁾ 다만 외국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베이비박스는 유리과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안에 따뜻한 침구가 깔려있고, 외부에서 문을 열고 그곳에 아기를 넣은 후 닫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일단 문이 잠기면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 베이비박스의 문이 잠기면 자동으로 건물 내부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어서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를 데려가 보호하게 된다.

베이비박스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가 있으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체코,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는 사실상 용인되고 있다.⁴⁾ 반면에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베이비박스가 금지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생모가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지정된 보호시설에서 직원과 대면하여 아기를 인도하는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베이비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Safe Haven Law).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생모가 아기를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가는 경우에는 생모에 관한 정보가 남지 않아서 생모의 익명성은 완벽하게 보장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이용하여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우선 베이

3) 베이비박스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는 헝가리에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이 마련되어 있다.

4) 이외에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 등지에 베이비박스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비박스는 미혼모 등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생모가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이 고립된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 전후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임신기간 동안 출산, 양육(생모에 의한 양육 가능성), 입양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도 없이 최후의 선택으로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고립된 임신과 출산과정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 채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생모와 아기가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생모를 위해서도 아기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모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남지 않으므로,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는 실현되기 어렵다.

2. 익명출산

익명출산이란 임신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⁵⁾ 출산전후에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에 관한 비용은 국가나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생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다만 생모의 성명과 주소 등 생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출산 당시의 상황, 익명출산을 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가 익명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출산은 임신여성과 자녀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익명출산이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나라로는 프랑스(1941), 룩셈부르크(1993), 이탈리아(1997), 오스트리아(2001) 등이 있으며,⁶⁾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사실상 용인되고 있다.

3. 신뢰출산

신뢰출산은 임신한 여성에게 의료기관에서 익명(또는 가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익명출산과 같지만,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녀의 출생등록부에는 생모의 가명이 기록되지만, 이와 별도로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는 봉투에 밀봉되어 국가기관이나 자녀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보관된다. 자녀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그 봉투에 담긴 생모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나, 생모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신뢰출산은 익명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신여성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익명출산과 달리 생모의 인적사항이 보존되므로,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모의 경우에는 신뢰출산의 가능성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4년에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신뢰출산 서비스의 제공이 익명출산이나 베이비박스의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현재 독일에는 신뢰출산과 익명출산, 베이비박스가 공존하고 있다. 물론 익명출산과 베이비박스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용인되고 있는

5) 산모가 아기를 출산한 의료기관 등에는 산모의 신상정보를 남기지만,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의 출산도 익명출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Hepting, „Babyklappe und „anonyme Geburt, FamRZ 2001, 1573.

6)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는 베이비박스가 없으나,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는 익명출산 외에 베이비박스도 존재한다. 다만 이탈리아에서는 베이비박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용인되고 있을 뿐이다(이탈리아 전역에 51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6년에 로마의 Santo Spirito 병원에 처음으로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다).

상태이다).

독일 이외에 신뢰출산을 도입한 나라로는 체코가 있다. 체코는 2004(2004년 9월 1일 시행)년에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임신여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한 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⁷⁾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밀봉되어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 보관된다. 이와 같이 봉인된 서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으며, 진료 및 출산과정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의료진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출생등록부에는 자녀의 출생연월일과 출생장소, 성별, 성명 등이 기록되며, 부모의 성명, 주소 등 부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⁸⁾

독일에는 2000년부터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2010년 무렵에는 독일 전역에 약 100개소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고, 130개의 병원에서는 익명의 출산이 가능하였다.⁹⁾ 2000년에 베이비박스에 맡겨지거나(대면으로 자녀를 인도한 경우 포함)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는 46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47명으로 증가하여 약 3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부터¹⁰⁾ 2013년까지 독일에서는 약 1312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지거나 병원에서 생모의 익명하에 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¹¹⁾(이 중 익명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약 2/3,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이 1/3 정도 된다고 한다).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을 합법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¹²⁾

III. 외국의 입법례

(2) 신뢰출산제도의 도입

1. 독일의 신뢰출산제도

독일 사회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베이비박스가 설치, 운영되고 익명출산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3월에 신뢰출산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 제

(1) 신뢰출산제도의 도입 이전

7) 체코국민건강보호법 제67조b 제2항. 체코에서 장기간 체류한 독신여성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체코국적의 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Hrusakova, Anonyme und geheimgehaltene Mutterschaft in der tschechieschen Republik, in: Hoffer, Klippel, Walter(Hrsg.), Perspektiven des Familienrechts(FS f r Schwab, 2005), S. 1402f. 체코에서는 낙태율의 감소, 영아살해의 방지, 영아유기의 방식을 목적으로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8) 체코신분등록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9) 독일에서 익명의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기부금과 병원자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10) 독일에서 베이비박스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2000년(함부르크)이지만, 이미 1999년에 바이에른 주에서 가톨릭여성단체가 생모의 인적 사항을 묻지 않고 아기를 산모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시설을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베이비박스와 다른 점은 산모의 얼굴을 보고 직접 손으로 아기를 인도받았다는 것이다). Coutinho/Krell, Anonyme Geburt und Babyklappen in Deutschland - Fallzahlen, Angebote, Kontexte, Hrsg. Deutsches Jugendinstitut e.V. (2011), S. 27f; 2000년 12월 Flensburg에 있는 한 병원에서 독일 최초의 익명출산이 이루어졌다. Grünwald, Anonyme Kindesabgabe in der Retrospective, in: Busch, Krell, Will(Hrsg.), Eltern (voresrt) unbekannt: anonyme und vertrauliche Geburt in Deutschland(2017), S. 25.

11) Sommer, Aktualisierung von Daten über Beratung zur vertraulichen Geburt sowie über Auswirkungen des SchwHiAusbauG auf anonyme Formen der Kindesabgabe, 2019, S. 6; Coutinho/Krell, Anonyme Geburt und Babyklappen in Deutschland - Fallzahlen, Angebote, Kontexte, Hrsg. Deutsches Jugendinstitut e.V. (2011), S. 11f.

12) 독일에서는 200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익명출산과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Wolf, Über Konsequenzen aus den gescheiterten Versuchen, Babyklappen und „anonyme“ Geburten durch Gesetz zu legislieren, FPR 2003, 113ff; Will, Vertrauliche Geburt in Deutschland - die Genese des Gesetzes, in: Busch, Krell, Will(Hrsg.), Eltern (voresrt) unbekannt: anonyme und vertrauliche Geburt in Deutschland(2017), S. 50ff.). 특히 2002년 4월에는 기민당과 사민당, 녹색당 등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연합하여 익명출산과 베이비박스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여 기대를 모았으나, 장기간의 토론 끝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BT-Drucks. 14/8856. 당시 제출된 법안은 익명출산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익명성을 원하는 임신여성을 대화로 유도하고, 상담을 통하여 임신여성을 심리적 압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기초한 것이었다. BT-Drucks. 14/8856, S. 5; Wiesner-Berg, Anonyme Kindesabgabe in Deutschland und der Schweiz(2009), S. 400ff. 참조.

출되었으며(임신여성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안¹³⁾), 2013년 6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⁴⁾ 이에 따라 임신여성이 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익명(가명)으로 자녀를 출산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¹⁵⁾ 이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등록부에 생모의 가명만이 기록되므로,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따라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보아서는 생모를 알 수 없다).

신뢰출산으로 아기를 출산한 생모의 친권은 정지되며(독일민법 1674조의a),¹⁶⁾ 자녀를 위하여 후견이 개시된다(독일민법 제1773조). 신뢰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를 입양시키는 데 생모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독일민법에 의하면 부모가 소재불명인 때에는 법원은 부모의 승낙이 없어도 입양심판을 할 수 있는데, 신뢰출산을 선택한 생모는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독일민법 제1747조 제4항). 임신여성이 신뢰출산을 선택하여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도 그 후에 결정을 번복하고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입양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¹⁷⁾ 생모는 아기를 돌려받아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제로서 생모는 자녀의 출생등록에 필요한 자신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등)을 밝혀야 하고, 생모가 아기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는 별도의 봉투

에 밀봉되어 국가기관¹⁸⁾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보존되며, 자녀는 16세가 되면 그 봉투에 담긴 생모에 대한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봉투의 표면에는 생모의 가명, 자녀의 출생장소와 일시, 아기를 출산한 의료기관 등을 기록한다). 그러나 생모는 자녀가 15세가 되면(즉 자녀가 생모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기 1년 전부터)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익명성 유지에 관한 생모의 이익이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신뢰출산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536명의 자녀가 신뢰출산의 방식으로 태어났다(그러나 신뢰출산 후 모가 익명성을 포기한 사례가 7.8%에 이른다. 그중에는 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사례와 법절차에 따라 입양을 시키기로 결정한 사례가 혼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신뢰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수는 499명이다).¹⁹⁾ 신뢰출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와 익명출산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수는 연간 약 33.3%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⁰⁾ 신뢰출산제도가 도

13) Entwurf ein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14) BT-Drucks. 17/12814; BT-Drucks. 17/13062; BT-Drucks. 17/13391; BR-Drucks. 214/13; 독일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옥주,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자료집(2022. 7. 4.), 16면 이하 참조.

15) 신뢰출산에 관한 비용은 독일연방정부가 부담한다. § 34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 SchKG).

16) 친권이 정지되면 생모는 친권 그 자체를 상실하지는 않지만,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독일민법 제1675조).

17)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아동청이 입양을 알선하며(입양알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양부모로서 적합한 지원자에게 아기를 인도하여 입양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가정에서 적응기간을 보내도록 한다(입양알선에 관한 법률 제8조). 입양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가 1년 정도 아기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기가 예비 양부모에 대하여 애착을 형성하게 되므로, 아기를 이들로부터 분리하여 생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BT-Drucks. 13/13391, S. 3.

18) Das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산하기관으로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 Sommer, Aktualisierung von Daten über Beratung zur vertraulichen Geburt sowie über Auswirkungen des SchwHiAusbauG auf anonyme Formen der Kindesabgabe, 2019, S. 4; ZEIT ONLINE 2017. 7. 12;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den Auswirkungen d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BT-Drucks. 13/13100, S. 5.

20) Sommer, Aktualisierung von Daten über Beratung zur vertraulichen Geburt sowie über Auswirkungen des

입된 이후 2014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신여성상담소²¹⁾에서 신뢰출산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임신여성의 수는 2249명에 이른다.²²⁾ 상담의 목적은 단지 신뢰출산에 대한 안내의 수준을 넘어 곤경에 처한 임신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실제로 신뢰출산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신여성들 중 24.2%는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삶을 선택하였고,²³⁾ 13.7%는 자녀의 출산 후 법절차에 따른 입양을 선택했다(이 경우 자녀의 출생등록부에 모의 인적사항이 기록되고, 자녀는 16세가 되면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을 받은 여성들 중 신뢰출산을 선택한 비율은 21.8%에 지나지 않았다(또한 상담을 받은 여성들 중 익명출산을 선택한 비율은 4.5%에 그쳤다).²⁴⁾ 이는 신뢰출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그 목적은 오늘날까지 달성되지 않고 있다. 신뢰출산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은 당국의 묵인 하에 존속하고 있다.²⁵⁾

2. 프랑스의 익명출산

(1) 연혁

1780년경에 프랑스에는 약 250여개소의 베이비박스가 있었다고 한다.²⁶⁾ 프랑스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베이비박스가 사라지기 시작하여 1869년에는 마지막 베이비박스가 철거되었다. 베이비박스 대신 생모가 직접 영유아 포기사무소를 방문하여 1세 미만의 아이를 놓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아이를 포기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방문한 생모가 어느 범위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문제는 1904년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생모는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남기지 않고 아이를 사무소에 두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영유아 포기사무소는 임신여성보호소로 대체되었다. 갈 곳이 없는

SchwHiAusbauG auf anonyme Formen der Kindesabgabe, 2019, S. 7(자세한 내용은 신옥주,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자료집(2022. 7. 4.), 27면 이하 참조); BT-Drucks. 18/13100, S. 28f. 이는 신뢰출산제도가 없었다면 베이비박사나 익명출산을 이용했을 임신여성들 중 상당수가 신뢰출산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비박스는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출산을 한 산모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출산은 아기와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베이비박스 대신 신뢰출산을 선택하는 임신여성이 늘었다는 사실은 고립된 출산의 감소와 의료서비스를 동반하는 출산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21) 독일 전역에 국가로부터 공인된 상담소의 수는 1800개소가 넘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Busch, Ungewollte Schwangerschaft: Handlungsoptionen und Unterstützungssysteme jenseits von anonymer Kindesabgabe, in: Busch, Krell, Will(Hrsg.), Eltern (vorerst) unbekannt: anonyme und vertrauliche Geburt in Deutschland(2017), S. 94.

22) Sommer, Aktualisierung von Daten über Beratung zur vertraulichen Geburt sowie über Auswirkungen des SchwHiAusbauG auf anonyme Formen der Kindesabgabe, 2019, S. 10; 신뢰출산제도 도입 이전에도 임신여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상담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 이용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된다(M. Iler-Magdeburg, Recht auf Leben Die anonyme Geburt, FPR, 2003. 110). 상담과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익명성 보장은 임신여성에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3) 쾰른에 소재한 가톨릭 여성 사회복지단체의 경험에 따르면 익명의 상담 후 평균 75%의 여성이 자녀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BT-Drucks. 17/190, S. 10.

24) Sommer, Aktualisierung von Daten über Beratung zur vertraulichen Geburt sowie über Auswirkungen des SchwHiAusbauG auf anonyme Formen der Kindesabgabe, 2019, S. 11.

25) WELT 2017. 4. 15. “Drei Jahre vertrauliche Geburt: Ist die Babyklappe noch nötig?”

26) 프랑스에서의 베이비박스의 역사에 대하여는 FFrank, Die unterschiedliche Bedeutung der Blutverwandtschaften im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Familienrecht, FamRZ 1992, 1365/1368f.; Frank, Helms, Rechtliche Aspekte der anonymen Kindesabgabe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FamRZ 2001, 1340/1343f.; Helms, Die Feststellung der biologischen Abstammung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Recht(1999), S. 13ff.

임신여성들은 임신여성보호소에서 머물면서 출산을 할 수 있었다.²⁷⁾ 그 후 1941년 9월 2일 독일군 점령하에서 비시(Vichy) 정부의 법령²⁸⁾에 의하여 모든 여성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출산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였다. 이 규정은 당시 독일군의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프랑스 여성 중 성매매 피해자와 강간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익명의 출산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프랑스민법 제326조의 모태가 되었다.

(2) 익명의 출산에 관한 프랑스민법 규정

프랑스에서는 익명의 출산이 합법화되어 있어서(프랑스민법 제326조, 제341조) 생모는 자신의 신상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아기를 남겨둔 채 의료기관을 떠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에 공공의료

시설이나 개인병원에 입원하여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입원비와 출산비는 전액 사회보조금으로 지출된다.²⁹⁾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산모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기록할 수 없다.³⁰⁾ 이렇게 태어난 자녀는 생모의 입양 승낙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국가의 후견을 받게 되며,³¹⁾ 2개월이 경과하면 입양절차를 밟게 된다. 이 2개월의 기간 동안 생모는 입양의 승낙을 철회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³²⁾ 익명의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는 이루어지지만, 생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기록되지 않는다(프랑스민법 제57조 제1항). 다만 병원에서는 생모에 대하여 익명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본인, 생부의 신상과 익명으로 출산하게 된 제반사정 등에 관한 정보가 밀봉된 봉투를 아이에게 남길 것을 권유할 수 있을 뿐이다.³³⁾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600에서 700명의 아동이 생모의 익명에 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 2006년에서 2014년까

27) 자세한 내용은 안문희,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 중앙법학 제15집 제4호(2013), 219면 이하 참조.

28) La loi du 2 septembre 1941 sur la protection de la naissance.

29) Art. L. 222-6 I C.a.s.f. 또한 임신여성은 출산 전에 언제든지 출산을 돕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여 국가의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상담과정에서 임신여성에게 익명출산의 법적 심리적 결과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의 의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30) Art. L. 222-6 III C.a.s.f. 다른 환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배려하며, 산모의 의사에 따라 전화 연락과 방문도 금지하거나 산모가 동의한 특정인에 대해서만 허용할 수 있다.

31) Art. L. 224-4 Nr. 1 C.a.s.f.

32) Art. 63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33) Art. L. 224-5 II Nr. 4 C.a.s.f.; 2002년 법개정으로 생모가 자신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밀봉된 봉투를 남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봉투는 국가심의회(Conseil national: 원어는 Conseil national d'accès aux origines personnelles (CNAOP)이며, '자신의 생모에 대한 접근을 위한 국가심의회'로 번역될 수 있다)에 보관된다. 생모가 익명성을 철회하는 경우 자녀는 봉투에 들어있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Art. L. 224-7 C.a.s.f.). 국가심의회는 자녀와 생모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자녀가 국가심의회에 생모의 인적 사항을 열람하고 싶다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심의회는 생모에게 연락하여 동의 여부를 타진한다(Art. L. 147-6 C.a.s.f. 모와 자녀의 첫 번째 접촉은 국가심의회 직원을 통해서 전화로 이루어지며, 전화 통화 후에 모가 익명성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Galliez, Klier, Felnhofer, Kernreiter, Die anonyme Geburt in Österreich, Medizinische Universität Wien, 2019, S. 8, 10). 생모가 익명성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생모의 인적사항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라는 의사를 생전에 밝히지 않은 한,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물론 생모가 출산 당시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이 담긴 봉투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심의회도 생모를 찾을 방법이 없다(익명으로 출산한 모를 추적하여 찾아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민법 제341조). 200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9297명이 국가심의회에 생모의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였으며(익명으로 출산한 자녀 중 약 6.5%가 신청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8492건이 종결되었다. 그 중 34%는 생모의 인적사항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Galliez, Klier, Felnhofer, Kernreiter, Die anonyme Geburt in Österreich, Medizinische Universität Wien, 2019, S. 9, 14.

34) Frank, Die unterschiedliche Bedeutung der Blutverwandtschaften im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Familienrecht, FamRZ 1992, 1365/1368f.; Frank/Helms, Rechtliche Aspekte der anonymen Kindesabgabe in Deutschland und

지 매년 800-900명이 익명출산으로 태어났다는 보고가 있으며(2006:807명, 2007:829명, 2008:810명, 2009:868명, 2010:889명, 2011:908명, 2012:855명, 2013:852명, 2014:887명), 이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전체 임신여성 중 약 0.1%가 익명출산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IV. 충돌하는 권리

1.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자녀의 생명권

(1)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³⁶⁾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이러한 방식이 제도화될 경우 자녀는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전혀 실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실현에 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³⁷⁾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이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구라고 비판한다.³⁸⁾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할 정도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부모들은 처음부터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 등을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³⁹⁾ 따라서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은 기껏해야 영아의 유기를 조장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자녀가 원가정에서 자라날 기회와 권리를 박탈한다고 한다. 반면에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결정적인 논거는 이러한 장치들이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나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도 중요한 법익이기는 하나 자녀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한다.⁴⁰⁾ 반대론자들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근거하여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의 생명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⁴¹⁾는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이 실제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즉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통하여 영아유기치사나 영아살해 사례가 감소한다는 점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2)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Frankreich, FamRZ 2001, 1340/1343f.; Deutscher Ethikrat, Das Problem der anonymen Kindesabgabe - Stellungnahme(2009), S. 50ff.; http://de.wikipedia.org/wiki/Anonyme_Geburt. http://de.wikipedia.org/wiki/Anonyme_Geburt; Agnès Leclair, Dans le secret des mères qui accouchent sous X, Lefigaro, 2011. 9. 21; 프랑스 아동심리학자 Bonnet의 연구에 따르면 그 중 상당수는 프랑스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여성의 자녀라고 한다. Catherine Bonnet, Geste d'amour: L'accouchement sous X, Odile Jacob, 1990, p. 234 et s.

35) Observatoire National de L'Enfance en Danger (2015), La situation des pupilles de l'État Enquête au 31 décembre 2014, p. 14.

36) 신외출산도 넓은 의미에서 익명출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7)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38) 로스 옥, "베이비박스는 영아 살해를 줄이지 못한다", 프레시안 2014. 2. 7.

39) Krüger, Neonatizide und ihre Prävention im deutschsprachigen Raum, ZFA 2015, 39f.

40) Müller-Magdeburg, Recht auf Leben - Die anonyme Geburt, FPR, 2003, 111은 "자녀가 출생 후 곧 사망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을까?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불가분의 전제조건이다"라고 주장한다.

41) 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제2항: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으로 높은 영아 살해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2001년에 베이비박스⁴²⁾와 익명출산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2002년 초부터 티브이와 신문을 통해서 익명출산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였다).⁴³⁾ 2001년 4월 이후 모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거나 익명출산을 한 후 아기를 병원에 두고 떠나는 것은 더 이상 미성년자 유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자녀를 유기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오스트리아에서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후의 실태를 보면, 익명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에 비해서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의 수는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016년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기 48명,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 2명; 2017년 37명, 3명; 2018년 36명, 5명; 2019년 28명, 2명; 2020년 24명, 4명; 2021년 32명, 2명).⁴⁴⁾

모가 익명출산을 선택한 경우 자녀는 기아와 같이 다루어지며, 출생증명서에도 인적사항은 기록되지 않는다. 익명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각 주(州)에서 정하는데, 수도 빈에서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출생 후 아동청이 자녀의 후견인이 되어 입양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위탁가정에 인도되어 위탁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가정위탁보호가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생모는 6개월 내(또는 입양 성립 전까지)에 입양의사를 철회하고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

익명출산을 선택한 임신여성들은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출산 후 입양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진다. 임신여성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온전히 산모에게 맡겨져 있다(익명출산을 하고 입양을 시키겠다는 결정을 했던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⁴⁵⁾ 상담과정에서 모에게 자녀를 위하여 편지를 써서 남길 것을 권유하며(모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출생배경 등에 대해서만 쓰는 것도 가능하다),⁴⁶⁾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편지를 받아갈 수 있다. 모가 편지쓰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 분만에 참여한 의료진이 출산과 관련된 간단한 인상을 기록으로 남긴다.⁴⁷⁾

(3) 2012년에 출간된 한 연구논문⁴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익명출산이 도입된 후 영아 살해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 논문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오스트리아 경찰에 집계된 영아살해건수를 기초로 하였는데, 2001년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전에는 10만 건의 출생 당 영아살해건수가 평균 7.2건이었으나(1991-2001), 익명출산 도입 후 그 수치는 3.1로 감소하였다고 한다(2002-2009). 연구팀은 같은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스웨덴의 영아살해율을 비교하였는데, 스웨덴

42) 2000년에 빈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2021년 현재 오스트리아의 8개 주에 15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BM für Arbeit, Babyklappen in Österreich 2019 참조.

43) Erlass vom 27. Juli 2001 über Babynest und anonyme Geburt.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거나 익명출산을 한 여성이 처벌되지 않도록 형법 제197조(미성년자 유기)를 폐지하였다(Verlassen eines Unmündigen § 197. Wer eine unmündige Person, der gegenüber ihm eine Fürsorgepflicht obliegt, verläßt, um sich ihrer zu entledigen,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zu bestrafen). 산부인과가 설치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내의 모든 병원들은 익명출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44)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오스트리아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수는 606명에 이른다.

45) Lisa Breit, Anonyme Geburt: Unter anderen Umständen, 5. November 2021, Familie-derStandard.de.

46) Galliez, Klier, Felnhofer, Kernreiter, Die anonyme Geburt in Österreich, Medizinische Universität Wien, 2019, S. 5. 그러나 아무런 개인 정보도 남기지 않는 모가 많다고 한다.

47) Steinermark 주의 Caritas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서 2002년부터 진행하는 방식이며, 오스트리아 전역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범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Galliez, Klier, Felnhofer, Kernreiter, Die anonyme Geburt in Österreich, Medizinische Universität Wien, 2019, S. 14.

48) Klier, Grylli, Amon, Fiala, Weizmann-Henelius, Pruitt, Putkonen, Is the introduction of anonymous delivery associated with a reduction of high neonaticide rates in Austria? A retrospective study, BJO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05 December 2013, p. 428.

과 핀란드에서는 영아살해율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스웨덴 1991-2001: 1.8, 2002-2009: 2.8. 핀란드 1991-2002: 1.6, 2002-2009: 1.3) 익명출산을 도입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영아 살해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1991-2001: 7.2, 2002-2009: 3.1).⁴⁹⁾

오스트리아에서 익명출산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수는 해마다 30명에서 4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익명출산이 자녀의 유기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익명출산이 자녀의 유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익명출산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자녀를 출산하여 일반적인 법절차에 따라 입양을 시키거나 스스로 양육하였을 모가 익명출산제도를 기화로 손쉽게 자녀와의 결별을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익명출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 익명출산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에 익명출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프랑스에서도 해마다 익명출산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익명출산이 자녀의 유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베이비박스에 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헝가리에서는 병원 출입문 뒤편에 표준화된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1996년 부다페스트에 첫 번째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 현재 헝가리 전역에서 32개소의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행위는 더 이상 형법상 처벌사유가 되지 않는다.⁵⁰⁾ 헝가리에서의 영아살해건수의 추이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데,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영아살해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7	20	18	19	29	2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2	21	30	13	10	2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2	8	8	4	9	13

2008	2009	2010	2011
9	6	1	3

2.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의 익명성 보호

익명출산, 그 중에서 특히 신뢰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성의 유지를 원하는 친생부모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생모의 성명과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자녀는 생모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생모가 오래 전에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생모의 익명출산 사실이 그 남편과 자녀에게 알려진다면 그 가정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생모의 가정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실현되어야 할 권리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이 대립되어 왔다. 하나는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49)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영아 살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세 나라의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에 각각 차이가 있는데(오스트리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에 가능한 반면, 핀란드는 최장 20주, 스웨덴은 18주까지 허용된다), 이것이 영아 살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점 역시 분명하지 않다. Klier, Grylli, Amon, Fiala, Weizmann-Henelius, Pruitt, Putkonen, Is the introduction of anonymous delivery associated with a reduction of high neonaticide rates in Austria? A retrospective study, BJO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05 December 2013, p. 433 참조.

50) Nederlands Instituut voor de Documentatie van Anoniem Afstanddoen(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Documentation of Anonymous Abandonment), <https://www.nidaa.nl/landendossier-a-o>.

이 영아의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와 익명출산의 가능성을 제공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없었다면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거나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입양절차를 밟았을 산모들이 손쉽게 자녀와 결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입장에서 보면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영아를 살해하는 산모들은 애초에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에 있으므로,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과 같은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이러한 여성들이 그러한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반면에 이와 대립되는 다른 하나의 관점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은 아기와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장치라고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서도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려는 임신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강간피해여성이 출산한 경우 - 원가정보호가 기본원칙이라고 해도 - 모에게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인 입양절차를 거쳐서 생모의 신상정보를 남기도록 강제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자녀가 자신의 친생부모와 출생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1941년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익명출산에 대한 법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당시 점령군과의 관계에서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에게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것과 법절차에 따라 입양을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제하였다면, 제3의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과거에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과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그 당시의 프랑스여성이 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임신 여성은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아동심리학자 Bonnet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프랑스에서 익명출산을 선택하는 여성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한다.⁵¹⁾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 40만 명을 육박하게 된 우리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낯선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위의 두 주장 중 어느 하나가 전적으로 옳고,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한 임신여성들 중에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면 출산 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반적인 입양절차를 거쳤을 산모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신뢰출산에 대한 독일이 평가보고서 참조).⁵²⁾ 이런 의미에서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이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한 여성들 전부가 이러한 그룹에 속한다고 보는 것 또한 무리라고 생각한다.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의 기회가 없었다면 거리에 영아를 유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산모들이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하여 아기의 생명이 보호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한 여성들 중에는 위와 같은 두 그룹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는 서로 다른 다양한 동기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⁵³⁾

사회경제적 이유로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51) 1979년부터 1984년까지 400건의 익명출산에서 모의 국적은 프랑스 58%, 북아프리카 30.7%, 12.3%는 나머지 국적으로 조사되었다. Catherine Bonnet, *Geste d'amour: L'accouchement sous X*, Odile Jacob, 1990, p. 234 et s.; 한편 500건의 익명출산을 조사한 Geadah에 따르면, 익명출산한 모의 출신은 아랍-무슬림이 75%, 프랑스 성인여성, 3.5%, 영미 1-2%(그리고 출신을 조사하지 않은 미성년 10-12%)로 나타났다(R. R. Geadah, "Accouchement anonyme", *Le Secret sur les origines*, Paris, ESF, 1986, p. 99).

52) Sommer, Aktualisierung von Daten über Beratung zur vertraulichen Geburt sowie über Auswirkungen des SchwHiAusbauG auf anonyme Formen der Kindesabgabe, 2019, S. 8.

53) 독일에서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주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이들은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한 임신여성과의 대화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기초하여 답변하였다),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하는 임신여성의 동기는 과도한 부담감(양육 책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곤경(예를 들어 가족이나 파트너의 압박), 파트너와의 갈등, 일자리 또는 교육기회의 상실 우려, 강간에 의한 임신, 어린 시절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경제적 곤경, 출산 후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할 가능성, 미성년자 임

수 있고, 심리적인 이유로 자녀와의 결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것이 그 이유라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나라(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익명출산의 수요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존재하며, 역기능과 순기능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단체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로 매일 빵을 나누어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빵을 받아가는 데, 그 중에는 스스로 빵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빵을 나누어 주는 곳이 없다면, 거기에서 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빵을 사게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료로 빵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혼재할 수 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어서 무료로 받는 빵이 없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람의 그룹과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자기 돈으로 빵을 살 수 있는 사람의 그룹이 병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그룹 중 어느 하나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두 가지 그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이다. 무료로 빵을 받는 사람들 중에 돈이 있어도 빵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것 자체를 아예 폐지하여야 하는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박스는 익명출산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익명출산은 임신여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보다 우수한 제도로

고 할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인적사항 및 출생배경 등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므로, 베이비박스과 비교해 볼 때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도 실현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다만 모의 신상에 대한 기록이 장래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이 경우 모의 익명성은 일정한 기간 유예되는 것에 불과하다), 임신여성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의미의 익명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익명출산을 하는 경우 모의 신상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되, 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익명출산을 주관하는 기관은 생모와 자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익명으로 편지를 교환하거나 전화통화를 연결하는 방식 등)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자녀와의 전화통화 후 익명성을 포기하는 모의 비율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파키스탄에서 베이비박스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독일에서는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이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에서 베이비박스가 아기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나라이며, 현재 전국에 300에서 350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다.⁵⁴⁾

우리 사회는 독일과 같지 않고, 파키스탄과도 다르다. 우리 사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박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익명출산의 도입 논의도 보다 실속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대안의 개발이 필요한 때다.

신 등을 언급했다. Coutinho/Krell, Anonyme Geburt und Babyklappen in Deutschland - Fallzahlen, Angebote, Kontexte, Hrsg. Deutsches Jugendinstitut e.V. (2011), S. 142.

54) 1970년에 Edih Foundation에 의해서 카라치에 최초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다. 당시 Edih Foundation이 카라치 시내에 유기된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신의 94% 이상이 유기되거나 살해된 영아(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Krell, Anonyme Kindesabgabe in anderen Ländern und Rechtskreisen, in: Busch, Krell, Will(Hrsg.), Eltern (voresrt) unbekannt: anonyme und vertrauliche Geburt in Deutschland(2017), S. 41.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2)

알코올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까요?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술을 소량 마시면 대뇌의 기능을 억제하므로 억압된 감정들이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되어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없었던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을 장기간 과용하면 뇌세포 파괴를 촉진시켜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사고능력 장애를 일으키고,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등 뇌기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시각, 미각, 청각, 언어, 균형감각 장애가 발생하며 숙면방해, 알코올성 치매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알코올을 장기간 과용하게 되면 고독감이나 고립감이 강해지고, 매우 예민해지며, 원망이나 분노 또는 자기연민과 공격적인 욕구를 지니게 될 뿐 아니라 두려움과 우울감을 지니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술로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며,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덕관념도 희박해집니다.

● 알코올성 치매

-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뇌가 위축되거나 잦은 두부의 손상, 영양 섭취의 부족 등으로 뇌에 손상을 주어 치매를 일으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약 23%가 치매환자로 밝혀졌습니다.

● 알코올성 정신증

- 술로 인해 망상이나 환청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단 기간 중 나타나는 알코올성 환각증은 다른 사람에게서 안 들리는 환청이 많으며 장기간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잘 생기고 보통 일주일 내에 없어집니다.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 불안장애

- 금단 증상의 하나로 불안이 생길 수 있으나 술 먹는 동안에도 불안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술 끊은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불안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일차적 불안장애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살행동

- 알코올중독자의 6~20%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특히 신체적 합병증, 부부 갈등, 직장문제, 범법행위로 인한 구속상태일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 의치증/의부증

- 성적 기능장애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병적 질투 및 의치증, 의부증 등이 생기게 됩니다.

● 인격의 변화

- 자기중심적이 되고,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책임감이 약해지고, 자기기만과 불신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변명을 하며 충동적인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알코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까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항상 술이 있을 정도로 술을 즐기고 많이 마시는 등 비교적 허용적이고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음주경험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국민들 중 음주인구의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여성 음주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경험율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이 일찍부터 음주문화를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²⁾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9조 4천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또한 음주와 관련된 사고와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³⁾ 음주운전으로 매년 수백 명이 숨지고, 가정폭력⁴⁾을 비롯해 살인·폭력·강도 등 제2의 범죄가 매일 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제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1) 통계청의 2018년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성인 음주율은 65.2%(남자 77.4%, 여자 53.4%)로 2016년 65.4%(남자 79%, 여자 52.3%)에 비해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였으나, 여성 음주율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음주자 중 40.5%는 금주가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사회생활(직장, 사업상, 친구관계)에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9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8년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8.7%, 여학생 14.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일수록 현재 음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년별 현재 음주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최근 3년 간 현재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청소년의 처음 음주 경험 연령은 남학생 13.0세, 여학생 13.7세로, 남녀 학생 간 차이는 0.7세였습니다. 위험음주율은 남학생이 9.1%로 여학생의 위험음주율(8.6%)보다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년대비 위험음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6),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 p622.

3)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2019년 기준 연간 15,708건이 발생해 이중 295명이 사망하고 25,96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대검찰청의 2014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살인범의 41.1% 방화범의 47.6%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4) 201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상담이 종료된 전체 행위자 260명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38.1%(9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음주상태였을 때 심한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 또는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정도의 심한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상담소

1999년 5월

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2000년 2월 29일

제 3대 곽배희 소장 취임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면서 8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 기관으로 지정된 상담소는 준비된 기관답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상담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해 갔다.(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가정상담> 5월호 기획연재④⑤에 게재된 바 있음)

이어 1999년 5월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를 신고했다.

2000년 2월 10일 상담소의 정기 전기 이사회가 열려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안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전토의에서는 199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심의 의결, 소장 선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5년의 임기가 만료된 김홍한 소장의 후임으로 곽

배희 부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곽배희 소장은 1973년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1995년 부소장에 취임하였으며 상담은 물론 강연, 방송 등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해 상담소를 널리 알려왔다.

이사회는 2000년 2월 29일 상담소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소장을 인준하였으며, 3월 16일 오후 3시 상담소 여성백인회관 6층 강당에서 200여 명의 하객이 모인 가운데 제 3대 곽배희 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취임식은 조경애 상담위원의 사회로 개식, 국민의례, 김홍한 이사장의 인사 말씀, 이석태 변호사의 신임소장 약력보고, 김홍한 이사장이 곽배희 소장에게 헌신과 사명감을 상징하는 소장 스톨을 전달한 소장취임의식, 신임소장의 취임사, 김정길 법무부 장관, 강기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축하 말씀, 축하 연주, 다과회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축하의 말씀 직후 상담소의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전 직원의 상명감을 담아 직원들이 직접 만든 '박'을 곽배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희 소장이 터뜨리고 직원들이 풍선을 날리는 순서가 마련 되어 축하와 기쁨의 열기를 더했다.

곽배희 소장은 1969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학부 졸업 후 대학 시절 은사였던 이태영 전 소장의 부름을 받고 상담소의 상담위원으로 일해 왔으며, 1995년부터는 상담위원 겸 부소장으로 상담소 업무에 헌신해 왔다.

곽배희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상담소 창설자인 이태영 소장의 뜻을 받들어 반 세기 역사와 업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상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목표와 각오를 제시하였다.

편집부



▲▼ 2000년 2월 29일 열린 제3대 곽배희 소장 취임식

◀ 취임사를 하는 곽배희 소장





회피하고 비난하는 폭력적 대화에서 벗어나 부부 사이의 올바른 대화 방식 찾아

2020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4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교육강좌 2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3회

상담기간

2020. 11. 10. ~ 2021. 5. 1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23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남(23세, 19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0년 7월 사건당일 직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해자는 전화기를 통해 행위자의 직장동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귀가한 행위자와 이를 이유로 시비하였는데 이 때 행위자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자신의 폭력성과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

음을 인정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알고 싶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평소 갈등요인으로 남편인 자신이 피해자를 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불만으로 여기는 점을 꼽았다. 부부대화를 점검한 결과, 행위자는 회피, 피해자는 비난과 모욕의 폭력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관계만족도는 사건당시는 10점 만점에 2~3점, 상담초기는 5점으로 서로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태였는데, 행위자에게 회피 대신 공감대화를 실천과제로 부과하였다. 그러던 중 2021년도 대학 입시에서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같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여 부부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잘 지낸다는 보고가 있었다.

행위자는 집단상담이 공통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좋았고, 그를 통하여 “아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해주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상담중기에 그동안의 생활 점검 결과, 행위자는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부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행위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피해자의 태도도 좋아졌다는 변화가 있었다.

피해자는 표현을 잘하지 않던 행위자가 표현을 많이 하고 눈빛이 따뜻해져서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변화를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사건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0점, 현재는 7~8점으로 평가하고, 만족도 상승요인으로 행위자가 전과 달리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꼽았다. 피해자는 향후에도 행위자가 아무

리 화가 나도 폭언이나 폭력을 하지 않고 말로 대화하기를 바랐다. 상담기간 중 폭언, 폭력이 없었고 그동안의 태도로 볼 때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과거의 피해 경험에 기인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인정과 바람을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5**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4회,
음주문제 집단상담 6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교육강좌 1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5회

상담기간

2020. 11. 4. ~ 2021. 5. 20.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재혼으로 3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는 일반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호프집을 운영하여 오후 5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새벽 2시 또는 4, 5시 까지 가게를 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20. 12. 가게를 닫고 행위자가 배달일을 하다가 2021. 3.부터 다시 가게를 운영하였다.

행위자는 2020년 2월 사건당일 피해자와 다툰 후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가게로 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양초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결과 행위자는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 행위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치고 자신이 술을 마신 정황을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단주도 하였고 현

재는 절주 노력 중이었다.

행위자는 부부갈등 원인으로 본인과 피해자의 음주문제, 성격차이, 경제문제 등을 꼽았다. 계속 절주할 것을 권하고, 부부대화법 점검 및 비폭력 대화법에 대한 교육 후 실천 과제를 부과하였다. 행위자의 생업상 음주문제 소인이 내재하므로 음주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음주문제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행위자는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중간점검 결과, 행위자는 그동안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절주 노력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고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절주 노력을 인정하였고, 사람이 단기간에 완전히 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기다릴 것이라고 하면서 행위자의 건강을 위해 술 문제를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10점, 현재는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전에는 매일 음주하고 1회 음주량은 5병까지도 마셨으나, 지금은 일주일에 4회 음주, 1회 음주량은 2병 내외라고 하면서 절주 효과를 인정하였다. 폭력 재발은 없었고, 부부관계 만족도도 사건 당시보다는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로부터 폭력재발하지 않기, 절주하기 등을 다짐받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0GDO****경범죄 미국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동생) 개별상담 16회,
교육강좌 4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아버지 전화상담 2회,
삼촌 개별상담 1회 등 23회

상담기간

2020. 10. 12. ~ 2021. 5. 24.

상담경과

행위자는 8살 때 부모가 이혼, 어머니는 미국으로 갔고 행위자와 누나 2명은 한국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살았다. 2015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부모 합의 하에 미국에 사는 모친에게 가게 되었다. 행위자에 의하면 모친이 강압적이어서 행위자 및 누나들과 충돌이 많았는데 누나들은 잘 적응했다고 한다. 미국에 간 초기에는 작은 누나와 사이가 좋았는데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작은 누나가 행위자를 괴롭혔다. 미국 생활 초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작은 누나를 행위자가 설득하여 누나의 마음을 바꾼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20년 7월 사건당일 캠프에서 돌아온 행위자가 자신이 인사하는데 무시하는 작은 누나와 다투다가 누나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하자 누나를 마구 때리는 폭력을 하여(경범죄), 미국 형법 242조에 의해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건 발생 시 누나가 신고하였고 접근금지처분도 신청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행위자가 갈 곳이 없는 곳을 알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이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행위자는 한국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그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본소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

행위자는 본 사건에서는 자신이 행위자이지만 이전에는 누나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다고 하면서, 누나를 때린 것은 ‘정말 자신이 누나의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할머니 집에서 거주하며 아버지, 삼촌과도 교류하였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였다. 행위자에게는 중독문제와 망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중독문제는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물 복용으로 도움을 받았고, 망상문제는 본소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도움을 받았다. 행위자는 망상과 관련한 부분은 약물치료를 받아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작은 누나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자신과 각별했던 작은 누나가 쌀쌀하게 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이

과거 누나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말린 것 때문이라고 믿고 그 생각을 키웠고(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작은 누나가 자신을 원망하면서 냉정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 믿게 되어 폭행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망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현실을 살고 싶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기간 중 영주권 때문에 미국에 1회 다녀왔고 어머니를 만나 진로에 대하여 의논하고 동의를 받았다. 행위자는 장차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했고, 한국에서는 그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상담 종결 즈음, 행위자는 할머니의 건강상 이유로 독립하여 혼자 지냈다. 또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향후 취업도 기대하게 되었다. 본소에서는 상담 확인서를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고, 향후 3개월마다 정신과 상담 및 진료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2022년 2월에 재판이 종결된다고 한다. 행위자는 누나에 대한 폭력을 후회했고,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분노를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향후 폭력을 재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11

● 배우자의 무시·모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37 |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저를 무시하면서 복종을 강요 하였고 제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조차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 자녀들도 있는데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 남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내

를 무시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38 | 남편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성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연애를 3년 이상 했는데도 제게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고 그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혼인 후 7년 간 성관계가 없었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제6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또한 사실 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

● 성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Q 문 39 |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남편이 성적으로

불완전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의사는 남편이 일시적인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속아 결혼한 것 같아 억울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Q 일시적인 성적 불완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따라서 남편에게 또 다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40 | 아내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잠자리를 거부했고 1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저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성관계가 싫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A 부부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Q 문 41 | 남편은 3년 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남자라면 형부나 남동생, 시동생과도 부정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근무 중에 불쑥 집에 들어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밤마다 남자관계를 고백하라고 괴롭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A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주벽이 심하면 이혼할 수 있다

Q 문 42 | 장남편은 주벽이 심하여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저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토록 식구를 괴롭히는 언사와 행동을 하다가도 술만 깨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시누이가 입원 일주일 만에 퇴원시켜 다시 주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

A 주벽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의 경우 남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식구를 괴롭히는 등 주벽이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탕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43 | 남편은 대기업의 직원인데 직장 일보다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각종 대출은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 돈까지 끌어다



투자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으면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계속하더니 이제는 사채 독촉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정동생의 사고 보상금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니 그마저 주식투자로 다 잃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

Q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인터넷 중독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44 | 남편은 퇴근하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 뒤지는 일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당연히 없고 컴퓨터에 남편을 빼앗긴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A 배우자의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배우자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45 |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결혼 초부터 남편과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싸울 때마다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하여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혼내시곤 합니다. 서른 살이 넘는 남자가 엄마 엄마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 주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사할 때도 시어머니가 이사 갈 곳

을 결정해 계약을 마쳤고 저는 이사 전날 어디로 이사 가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사한 일주일 후 시댁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남편은 저녁도 주로 시댁에서 먹고 옵니다. 도대체 결혼한 사람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A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 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Q 문 46 | 작년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기심에서 아내에게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더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아내의 과거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아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그런 일이 없다면 과거의 일만을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자녀학대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47 | 아내는 초등학생인 아이의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성적이 떨어지면 폭언과 폭행을 하며 가혹하게 훈육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는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이를 망칠 것만 같아 아내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비록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는 행위는 명백히 자녀학대에 해당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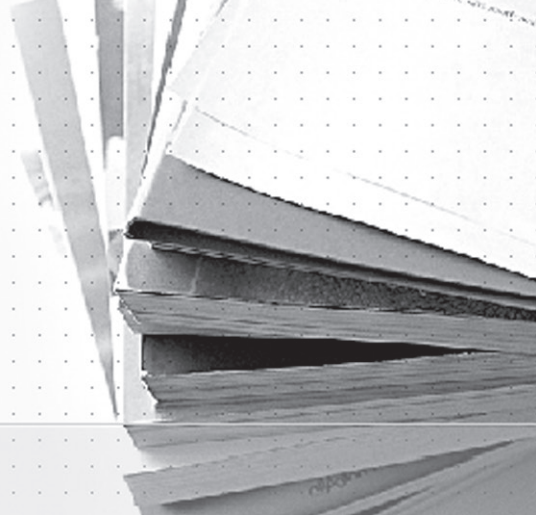
Q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관시술도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2년 전부터 남편의 제안으로 반려견을 입양하여 자식처럼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부 갈등으로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혹시라도 남편이 반려견을 데려가겠다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을까요?

Ⓐ 반려동물은 현행 민법상 물건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8조). 부부 일방이 혼

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했으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는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 배우자가 입양비를 부담하고 입양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데려갈 가능성이 크지만, 귀하가 주로 돌보았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비·비용을 지불하여 입양한 경우라면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전주가 누구인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이 적절치 않은 반려견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가 합의하도록 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 사이에 반려견 양육에 대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이혼조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수진 상담위원



4*6판, 268면의 작은 책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읽고 난 후에 마치 대하소설을 읽은 것 같았다. 낱길거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고, 내가 맞닥뜨렸다면 대단히 싫을 것 같은 상황이거나 사람들인데 그저 애잔하고 아련하기까지 했다.

이야기는 빨치산 출신 아버지가 죽고 그 딸이 상을 치르는 3일간의 이야기이다. 장례식장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3일 동안 만나게 되는 조문객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딸의 이야기다. 아버지와 인연을 맺은 이들은 원망이 얹힌 가족, 함께 지리산을 누비던 전직 동지들부터 다문화가정의 모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때로 무겁고 무섭다. 빨치산 형제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고, 누구는 죽고 또 누구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배앗겼다. 딸도 빨치산의 딸이란 족쇄를 벗어나려 발버둥 치며 살아왔다. 이 책은 그런 사연들을 하나씩 풀어놓은 것이다. 내상이 깊기도 하고 어떤 것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먹먹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천연덕스럽고 웃음이 나왔다. 이러한 데에서 작가의 내공이 느껴졌다.

사회주의자로서 죽을 때까지 자본주의 세상에서 고군분투했던 아버지가 죽음으로 해방된 이야기이니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이 참으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위장 자수'를 했던 빨치산 아버지는 남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뛰쳐나갔다. "오죽했으면 글짓냐" "궁게 사람이제"를 달고 살았다. 이 말들이 가진 이해의 깊이와 넓이란. 아버지는 사람을 좋아하고, 작

은 것을 사랑했다. 하지만 보통의 세상살이는 서툴기 그지없었다. 목이 잘리고, 내장을 쏘고 죽은 동지의 시신을 수습했던 전사였지만 발일은 힘겨워 두 시간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딸이기도 한 정지아 소설가는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으며,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 부모님의 삶을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전 3권)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단편소설 '풍경'으로 2006년 이효석문학상을, 소설집 '봄빛'으로 2008년 올해의 소설상과 2009년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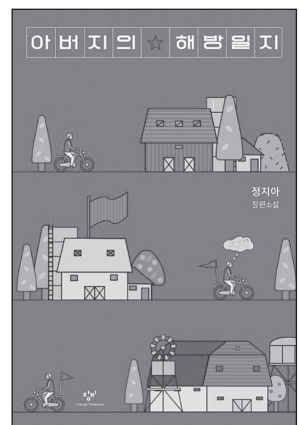
이 재미있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읽으며 20여 년 전, 극장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혼자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고 있었다. 주위에는 쌍쌍이 온 젊은이들이 많았다. 금기를 깨고 한테 어울리던 남북의 병사들, 남측의 병사가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던 북측의 군인에게 슬쩍 귀순을 권유했다. 북한 군인은 먹던 과자를 뽐내며 '내 소원은 우리 조국이 이것보다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이 싫은 나였지만 - 국민을 굶겨 죽이는 무능한 정권, 게다가 세습이라니 - 이 대목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극장의 모든 혹은 많은 이들이 와 웃는 것이 아닌가, 나의 눈물과 극장을 채우던 웃음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멍해지던 순간이었다. 왜 소설을 덮으며 이 대목이 떠올랐는지 생각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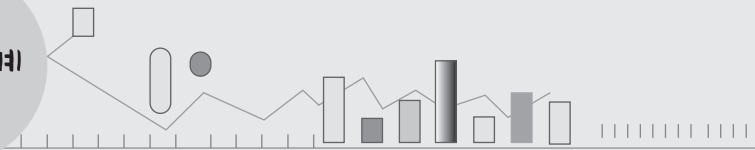
이숙현 편집부장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장편소설

창비, 2022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를 주제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본소 강당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를 주제로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족구성원 모두의 평등과 복리를 기하기 위한 가족법개정운동을 펼쳐왔으며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 그리고 그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제의 연장선에서 오랜 기간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바람직한 정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보호출산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심포지엄은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을 논쟁’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강영실 원장(애란원), 오영나 대표(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성민 변호사(HnL법률사무소, 법학박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던 현실에서 오랜만에 현장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사회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본 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와 간담회 가저

본소는 10월 11일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일행을 맞이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본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직후인 1998년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22년 10월 11일 현재까지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2,906명을 수탁받아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상담을 진행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재판부는 가정보호 위탁기관 방문 계획에 따라 이날 본소를 방문하였다.

8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본소 관배희 소장은 본소와 서울가정법원간의 오랜 업무협력 관계를 재조명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 특히 효과적인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에 요청되는 법원 측의 경제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는 본소가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을 잘 집행하여 주는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

고 법원 측의 수탁기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본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본소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연혁,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 현황,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고,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의와 본소의 답변 및 건의 사항 등이 논의 되었다.

간담회에 이어 재판부 일행은 개별상담실과 집단상담 및 교육강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의실, 상담소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시장 등을 돌아보았다. 재판부 일행은 이날 방문을 통하여 본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률구조사업과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 집행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본소를 방문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신정일 부장판사, 오승이 판사, 김선희 판사, 장서진 판사, 나영심 조사관, 장완영 조사관, 전국환 조사관이며, 본소에서는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박상진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관련 사진 2면)

본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10월 19일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과 법률구조 관련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본소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알선, 주거비 지원제도 안내 등 주거상담을 제공하고, 본소는 가정문제와 과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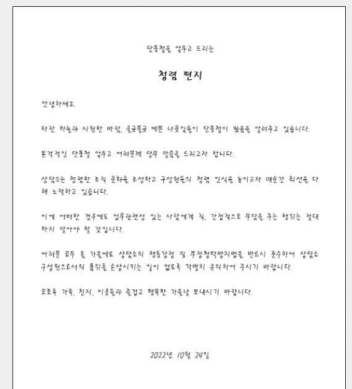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 등의 소송구조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형수 사장직무대행(경기주택도시공사), 정상길센터장(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정근희 팀장, 최홍석 과장, 김능법 센터장(부천 주거복지센터),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반부패·청렴 정책 일환으로 다양한 청렴 행사 진행

청렴 정책 관련 협의체 상시 운영
명절, 단풍철 앞두고 청렴 편지 발송
청렴 문구 공모전 개최
자원봉사학생 대상 청렴체험교실 진행
청렴문구, 화장실 및 정수기 등에 게시

상담소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기관장 주도하에 청렴 정책 관련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구성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다양한 청렴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9월 7일과 10월 24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단풍철을 앞두고 드리는 청렴 편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구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작 1건, 우수작 1건, 입선작 10건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작]

청렴은 채움, 부패는 비움

[우수작]

청렴백신으로 부정부패 예방하자!

[입선]

- (1) 청렴은 가까이, 부패는 거리두기
- (2) 청렴과 함께 하는 공정한 우리사회
- (3) 청렴, 맑고 깨끗한 우리사회의 초석!
- (4) 청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 (5) 청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눈부신 일상
- (6) 청렴한 그대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밝습니다.
- (7) 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8) 받으면 부끄러워지고 거절하면 당당해집니다.
- (9) 생활 속의 청렴 실천, 다가 오는 밝은 미래
- (10) 청렴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자원봉사 및 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체험교실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청렴 문구, 화장실 및 정수기에 게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부착, 모니터 화면에 게시,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제로 제작을 거쳐 게시까지 완료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청렴 관련 행사를 진행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약속하고 생활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지원 사업 관련 모임

지난 10월 28일 본소에서는 당일 심포지엄 직후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들과 모임을 가졌

다. 이날 모임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송지원 연계절차 등 상담소의 소송구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소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본소 복미영·최수진 상담위원과 법률홈닥터인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임규선 변호사, 서대문구청 김지희 변호사, 은평구청 오주은 변호사, 양천구청 심보선 변호사, 강서구청 이연정 변호사, 광진구청 황지영 변호사, 덕양구청 오세정 변호사, 도봉구청 김찬희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승훈 변호사, 본소에 해마다 기부

이승훈 변호사(전 청주지법원장)가 6년째 상담소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승훈 변호사는 201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부터 본소에 기부를 시작하여 2020년 상담소 평생회원이 되었고, 지난 10월에도 운영후원금을 보내왔다. 상담소는 소중한 인연과 귀한 뜻에 감사하며 이승훈 변호사의 기부금은 전과 같이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본소의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질 계획이다.

김태강 평생회원 별세 소식 뒤늦게 알려져

1970년대 말기, 초기 상담 자원봉사자로 상담소와 함께 하기 시작하여 평생회원, 상담소 회관 신축회원에 이르기까지 상담소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태강 평생회원이 지난 2019년 7월 4일 캐나다의 자택에서 별세하였다는 소식이 상담소에 뒤늦게 전해졌다.

차마 알릴 수 없어 소식이 늦어졌다는 유가족의 뜻과 함께 전해진 부고에 더욱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



죽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

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2022년 10월 상담통계

총 건수 5,006

법률상담 (4,219)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869	3,252	90	7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73	28	86

• 인터넷 정보 이용 102,185 건

2022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006건이었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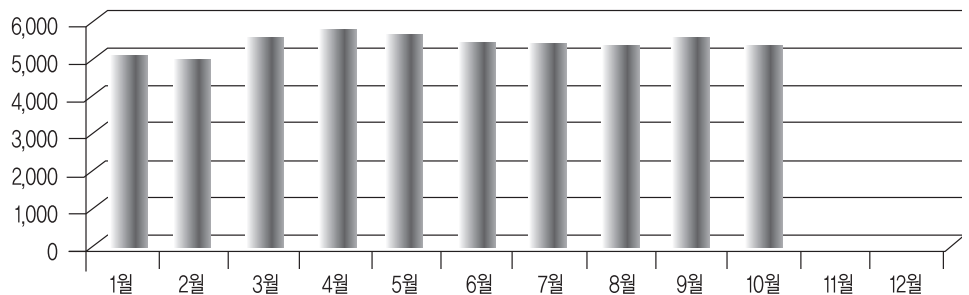
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219건 (84.3%), 화해조정 673건(13.4%), 소장 등 서류작성 28건(0.6%), 소송구조 86건(1.7%)이었다.

법률상담 4,21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9월에 비해 가사사건은 이혼(17.8%→18.7%), 친권·양육권(4.2%→4.6%), 양육비(6.9%→7.3%), 인지(1.2%→1.8%), 친생부인(0.7%→0.9%), 입양(0.9%→1.9%), 파혼(0.2%→0.3%), 혼인무효·취소(0.4%→0.5%), 유언·상속

(5.4%→6.7%), 개명(0.8%→1.2%), 미성년후견(0.5%→0.8%), 성년후견(2.3%→3.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민사사건은 부동산(0.1%→0.2%), 채권·채무(0.5%→0.6%), 파산(2.1%→2.6%), 민사절차(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21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69건(20.6%), 전화상담 3,252건(77.1%), 인터넷상담 90건(2.1%), 순회상담 7건(0.2%),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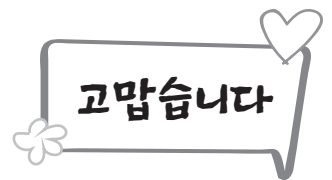
- 10.5.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 10.1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교육
- 조은경, 전규선 상담위원
- 10.19.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 10.31. 대전광역시가족센터-종사자대상가족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 상담참관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기 리갈클리닉Ⅱ 수업 수강생은 15명이다. 31일에는 서울 가정법원 이혼사건 조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13일과 20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사건 등을 조정하였다. 17일에는 YTN과 우리나라의 이혼 및 황혼이혼에 대하여 인터뷰 하였다(방송은 25일 뉴있지).



2022년 10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영덕,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윤미,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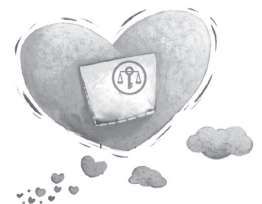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강정하, 권수민, 김가연, 김나연, 김다솔, 김상은, 김석주, 김선옥, 김세연, 김수지, 김승현, 김연주, 김 원, 김이훈, 김지민, 김지오, 김진효, 김채연, 김태은, 김하은, 도희원, 문송지, 민정원, 민지용, 박세현, 박수민, 박인아, 박재우, 박태희, 배호진, 백정은, 성은별, 신수민, 왕도경, 원지수, 이세진, 이예원1, 이예원2, 이은세, 이종원, 이진우, 장아현, 전재식, 정재원, 정희재, 조유진, 조윤정, 채다은, 천소영, 최건희, 최신양, 최유진, 최준영, 하승연, 하유지, 허경호, 허은서, 허인서, 허정수, 홍윤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이승훈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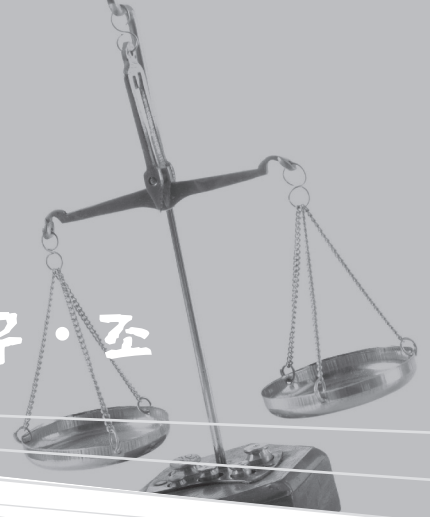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동서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포탈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법률구조 2021-1-455

담당 : 성기배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50대)는 2012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며, 사건본인들은 피고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마쳤으나 사실은 원고가 혼인 외로 출산한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8년경 자녀를 출산하고 피고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무시, 음주 및 폭언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2019년경 가출하였고 당시 교제하던 사람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동거하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친생추정 조항에 따라 피고의 자녀들로 출생 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였다.

결과 : 승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8. 24.)

1.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나 사정 변경에 따라
장래 양육비 인정

법률구조 2021-1-515

담당 : 권수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슬하에 성인자녀(1명)와 사건본인들(2명)을 두었으나, 2013년 협의이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양육비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상대방은 형편이 되면 언제든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장애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소 제기 이후 폐문부재로 인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2번의 주소보정 끝에 결국 공시송달처분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 6. 2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2. 2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외도 후 가출하여 8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2-1-73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내용 : 원고(남, 40대)와 피고(여, 40대)는 2005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외도를 하다가 원고에게 들켜, 2014년 9월경 가출하여 2015년 6월경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은 피고의 장기간 가출 및 연락두절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와의 혼인관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8.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2.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기피해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89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소방시설 안전관리자로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집단 따돌림을 받아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 증상이 악화되어 퇴직하였으며,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마침내 근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를 총 3번이나 당하면서 2,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다. 당시 신청인의 능력만으로는 이자 상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이른바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신청인은 사기 사건을 계기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근로활동을 멈추고 치료에 전념해야 하였다. 현재까지 신청인은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환영과 환청으로 고통받고 있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8. 11.)

채무자를 면책한다.

**6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절차를 통한 양육비 지급 강제**

법률구조 2022-1-93

담당 : 이승익 변호사

사건명 : 재산명시

내용 : 채권자(여, 4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09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하고, 채무자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2009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5년 채권자는 재산조회절차를

친권자가 되도록 변경하고, 양육비청구 및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청주지방법원 2022. 10. 18.)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11.부터 월 300,000원씩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상대방은 아래 사항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청구인은 적극 협력한다.

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나. 겨울방학, 여름방학 각 3박 4일

다. 설 연휴 1박 2일

라. 위 면접교섭 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최소 3일 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4.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2. 10. 6.)

사건본인의 성을 “0(△)”로, 본을 “00(△△)”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147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대)은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린 나이에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기에 작은 상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1970년경 택시 운전을 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였고, 1976년경 혼인하였다. 신청인은 꾸준히 운수업에 종사하였으나 1997년경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일용근로마져 일거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졌고, 이자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채무둘러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치매초기진단을 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0.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